

주주총회 소집통지

(제 26 기 정기)

주주님께

주주님의 건승과 다행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정관 제 17 조에 근거하여 제 26 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2021년 3월 29일(월) 오전 9시

2. 장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42, 스페이스닷원 1층 멀티홀

3. 회의목적사항

1)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2) 부의안건

제 1 호 의안: 제 26 기(2020.1.1~2020.12.31)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 승인의 건(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현금배당: 1주 당 배당금 150 원)

제 2 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첨부 1]**

제 2-1 호 의안: 사업의 목적 변경의 건(제 2 조)

제 2-2 호 의안: 기준일 변경의 건(제 6 조의 3, 제 10 조, 제 11 조, 제 13 조, 제 14 조, 제 15 조, 제 16 조, 제 37 조, 제 37 조의 2)

제 2-3 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 선임의 건(제 27 조)

제 2-4 호 의안: 기타 일부 조항 변경의 건(제 12 조, 제 15 조의 2 제 23 조, 제 29 조, 부칙)

제 2-5 호 의안: 액면분할의 건(제 6 조)

제 3 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3 인) **[첨부 2]**

제 3-1 호 의안: 최세정 사외이사 선임의 건 (2 년)

제 3-2 호 의안: 조규진 사외이사 선임의 건 (2 년)

제 3-3 호 의안: 박새롬 사외이사 선임의 건 (2 년)

제 4 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윤석 선임의 건(2 년) **[첨부 3]**

제 5 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감사위원 2 인) **[첨부 4]**

제 5-1 호 의안: 최세정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년)

제 5-2 호 의안: 조규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년)

제 6 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20 억원)

제 7 호 의안: 이사회에서 기 결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제 8 호 의안: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첨부 5]**

4. 경영참고사항 등의 비치 및 공고

상법 제 542 조의 4 에 의거하여 회사의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점, 명익개서대행회사(KB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고,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는 주주님께서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님들께서는 하기 6 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주주님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1) 전자투표 ·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인터넷 주소:「<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https://evote.ksd.or.kr/m>」

2)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1년 3월 19일 9시 ~ 2021년 3월 28일 17시(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3) 시스템에서 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 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코스콤 증권거래용 인증서, 금융결제원 개인용도제한용 인증서 등

4)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서비스 이용 약관 제 11조 제 3항)

7.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 행사: 신분증
- 대리 행사: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8. 기타

- 1)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총회 입장전 '열 감지'의 측정 결과에 따라 발열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주주의 경우에는 출입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 더불어 주주총회 당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입장 인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3) 주주총회 개최 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확산에 따른 불가피한 장소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4)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서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 보내실 곳 (등기우편 또는 퀵서비스)

서울/경기권에서는 착불로 퀵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수령인을 카카오 IR 팀으로 지정 부탁드립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5, H스퀘어 N동 7층 IR팀 김수열, 김다경 담당자 앞

연락처: 02-6718-1082 / 010 - 2972-8845 / 010-5773-2464

퀵서비스 번호: 02-1588-3047 (고고엑스), 1번 다이얼(개인퀵) 후 카카오 IR 팀으로 주주총회 위임장 착불 송부 요청.

2021년 3월 12일

주식회사 카카오

공동대표이사 여민수, 조수용
명의개서대리인 KB 국민은행장 허인

[첨부 1] 정관변경의 안

제 2-1 호 의안: 사업의 목적 변경의 건(제 2 조)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2 조 (목 적) 당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u>27. 대리운전서비스업</u>	제 2 조 (목 적) 당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사업목적 삭제 - 종속회사(카카오모빌리티) 의 사업 진행

제 2-2 호 의안: 기준일 변경의 건(제 6 조의 3, 제 10 조, 제 11 조, 제 13 조, 제 14 조, 제 15 조, 제 16 조, 제 37 조, 제 37 조의 2)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6 조의 3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u>9. 제 7 항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1 조를 준용한다.</u>	제 6 조의 3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삭제)	상법 개정(배당기산일)
제 10 조(주식매수선택권) <u>8.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1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u>	제 10 조(주식매수선택권) (삭제)	상법 개정(배당기산일)
제 11 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u>당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가 발행된 해가 속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u>	제 11 조 (동등배당) <u>당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u>	상법 개정(배당기산일)
제 13 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1. 당 회사는 매년 1 월 1일부터 1 월 31 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며, 매년 12 월 31 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2. 당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 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3. 당 회사는 제 2 항의 경우에 기간과 일자를 그 기간 개시일 또는 그 일자의 최소 이(2)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13 조(기준일) 1. 당 회사는 매년 12 월 31 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2. 당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 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삭제)	상법 개정(기준일) 및 문구 수정
제 14 조 (전환사채의 발행) <u>6. 전환사채의 이자나 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의 배당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년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해 전환사채의 발행년도 중에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당해 전환사채 발행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u>	제 14 조 (전환사채의 발행) <u>6.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u>	상법 개정(배당기산일)

제 15 조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6.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대하여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때가 속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년도 말에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해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년도 중 신주가 발행된 경우에는 당해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일에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5 조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삭제)	상법 개정(배당기산일)
제 16 조 (총회의 종류) 2. 정기주주총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제 16 조 (총회의 종류) 2. 정기주주총회는 제 13 조 제 1 항에서 정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상법 개정(기준일)
제 37 조 (이익 배당) 3. 제 1 항의 배당은 매 회계년도 말에 주주 명부에 등록된 주주 및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 37 조 (이익 배당) 3. 제 1 항의 배당은 제 13 조 제 1 항에서 정한 날에 주주 명부에 등록된 주주 및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상법 개정(기준일)
제 37 조의 2 (중간배당) 4. 사업년도개시일 이후 제 1 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중간배당 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중간배당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37 조의 2 (중간배당) (삭제)	상법 개정(배당기산일)

제 2-3 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임의 건(제 27 조)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27 조 (감사위원회) (신설)	제 27 조 (감사위원회) 7.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 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8.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 368 조의 4 제 1 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9.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 434 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 7 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10.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상법 개정(감사위원회) 반영

	<u>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u>)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u>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u>	
--	---	--

제 2-4 호 의안: 기타 일부 조항 변경의 건(제 12 조, 제 15 조의 2, 제 23 조, 제 29 조, 부칙)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12 조 (주주명부와 명의개서대리인) 1. 당 회사는 <u>대한민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주주명부를 둔다.</u> (중략) 4. 제 3 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u>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에 따른다.</u> (신설)	제 12 조 (주주명부와 명의개서대리인) 1. 당 회사는 <u>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u> (중략) 4. 제 3 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u>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u> 5. 당 회사는 <u>5%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u>	전자등록법 반영
제 15 조의 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당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15 조의 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당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u>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 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u>	전자등록법 반영
제 23 조 (이사의 수) (신설)	제 23 조 (이사의 수) <u>3. 당 회사의 이사회는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한다.</u>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이사)
제 29 조 (이사회 구성) 3. 이사회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로 하여금 이사회규정 등에 의하여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제 27 조에 의한 감사위원회 ② 보상위원회(Compensation Committee) ③ 이사회후추천위원회(Nomination Committee) ④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제 29 조 (이사회 구성) 3. 이사회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로 하여금 이사회규정 등에 의하여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제 27 조에 의한 감사위원회 ② 보상위원회(Compensation Committee) ③ 이사회후추천위원회(Nomination Committee) ④ ESG 위원회(ESG Committee) ⑤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위원회 신설
부칙 (신설)	부칙 <u>·이 정관은 2021 년 3 월 29 일부터 시행한다.</u>	부칙 신설

제 2-5 호 의안: 액면분할의 건(제 6 조)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제 6 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종류)

1.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이하 “수권주식”이라 한다)는 일억오천만(150,000,000)주로 한다. 주당 액면가는 오백(500)원이다.

제 6 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종류)

1.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이하 “수권주식”이라 한다)는 칠억오천만(750,000,000)주로 한다. 주당 액면가는 일백(100)원이다.

액면분할 결정

[첨부 2] 이사선임의 건

1. 후보자 성명 등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최세정	1971-07-03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조규진	1973-09-03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박새롬	1990-02-23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2. 후보자 약력 등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기간	내용
최세정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학력사항>	
		1994 년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 학사
		1998 년	미시건 주립대학교 광고학 석사
		2002 년	미시건 주립대학교 매스미디어(광고) 박사
		<경력사항>	
		2002 년~ 2011 년	텍사스-오스틴 대학교 광고학과 조교수, 부교수
		2017 년~ 2018 년	광고연구 편집위원
		2017년~ 2020 년 3 월	JTBC 미디어컴 사외이사
		2017 년	한국방송학회 연구이사
		2018 년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편집이사
		2019 년	한국광고학회 부회장
		2019 년~ 2020 년	한국미디어경영학회 회장
		2019년~ 2021년 1 월	한국광고홍보학회 편집위원장
		2011 년~ 현재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2016 년~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위원
		2017 년~ 현재	Journal of Interactive Advertising, Editorial Review Board, Member
		2018 년~ 현재	한국엠씨엔협회 자문위원
		2019 년~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위원
		2019 년~ 현재	고려대학교 미디어대학원 주임교수
조규진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학력사항>	
		2007 년	MIT 기계공학박사
		2007 년	Post Doc, MIT
		2007 년~ 2008 년	Post Doc, Harvard Microbotics Lab
		<경력사항>	
		2008 년~ 현재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2013 년~ 현재	사단법인 한국정밀공학회 평의원
		2016 년~ 현재	인간중심 소프트 로봇 기술 연구센터 센터장
		2017 년~ 현재	카카오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2018 년~ 현재	사단법인 제어로봇시스템학회 이사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기간	내용
박새롬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보안공학과 조교수	<학력사항>	
		2013 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학사
		2018 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공학박사
		<경력사항>	
		2018 년~ 2019 년	서울대학교 수학기반산업데이터해석 연구센터 연구원
		2019 년~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보안공학과 조교수

[첨부 3]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윤석 사외이사 선임의 건

1. 후보자 성명 등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윤석	1962-03-06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2. 후보자 약력 등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기간	내용
윤석	윤앤코 대표이사	<학력사항>	
		1985 년	연세대학교 경영학
		1987 년	MBA, NYU 경영대학원
		<경력사항>	
		1988 년~ 1993 년	KPMG New York, Audit Manager
		1993 년~ 1997 년	SG Warburg 증권 (한국), Senior analyst
		1997 년~ 2011 년	크레딧스위스증권(한국) MD/리서치센터장
		2011 년~ 2014 년	삼성증권 전무, 홀세일본부장/리서치센터장
		2015 년~ 2016 년	삼성자산운용 부사장, 액티브운용총괄
		2017 년~ 2018 년	삼성액티브자산운용(부사장) 대표이사
		2019 년	삼성액티브자산운용 비상근 고문
		2020 년~ 현재	윤앤코 대표이사

3. 후보자의 체납사실 등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윤석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첨부 4]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 후보자 성명 등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최세정	1971-07-03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조규진	1973-09-03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2. 후보자 약력 등

후보자 약력 등은 별첨 2 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후보자의 체납사실 등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최세정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조규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첨부 5] 분할계획서

주식회사 카카오(이하 "**분할회사**"라 함)는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이하 "**신설회사**"라 함)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1. 분할의 목적

- (1) 분할회사는 멜론사업부문(음원서비스, 뮤지컬, 티켓)을 분리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카카오 공동체 내에서의 적극적인 협업과 시너지를 도모할 수 있는 지배구조 체제를 확립하고자 한다.
- (2) 이를 통해, 카카오 공동체가 보유한 음악, 영상, 스토리 등 여러 콘텐츠 사업 역량을 결합하여,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사업 기반을 갖추고자 한다.
- (3) 상기와 같이, 지배구조 체계를 변경하고 카카오 공동체 내 콘텐츠 사업 역량을 집중하여,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한다.

2. 분할의 방법

-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멜론사업부문(음원서비스, 뮤지컬, 티켓)(이하 "**분할대상부문**"이라 함)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가 존속하면서 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배정받는 물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한다. 분할 후 분할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한다.

【 회사 분할 내용 】

구 분	회 사 명	사업부문
분할회사	주식회사 카카오	분할대상부문을 제외한 모든 사업부문

구 분	회 사 명	사업부문
신설회사	주식회사 멜론컴퍼니	분할대상부문

주) 신설회사의 상호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분할기일은 2021년 6월 1일로 한다.
- (3)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2항에 의거 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본 분할계획서에서 신설회사에 이전되는 것으로 정한 채무(책임을 포함함, 이하 본 분할계획서에서 동일함)만을 부담하고, 분할회사의 채무 중 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분할회사도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를 위하여 별도의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기로 한다.
- (4) 본 분할계획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분할회사에 속한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 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는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 분할계획서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다만, 분할대상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회사와 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i) 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 등의 승인/인가/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나 (ii)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분할대상부문과 그 이외의 사업 부문에 모두 관련됨에도, 해당 계약 중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부분과 그 외의 사업 부문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그와 같다
- (5)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 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 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 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사법 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에 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만약 어느 분할 대상 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 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신설회사와 분할회사에 각각 귀속된다.
- (6) 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분할회사가 변제하거나 분할회사의 출재로 신설회사가 면책이 된 경우 분할회사가 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회사가 분할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신설회사의 출재로 분할회사가 면책이 된 때에도 이와 같다.
- (7)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의 귀속에 관하여도 (5)항과 같이 처리한다.
- (8) 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결정 방법은 분할대상부문에 속하거나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산, 부채를 신설회사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향후 신설회사의 운영 및 투자계획,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3. 분할일정

구 분	일 자
이사회 결의일	2021. 3. 12.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21. 3. 29.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개시	2021. 4. 12.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종료	2021. 5. 24.
분할기일	2021. 6. 1.
분할회사의 분할보고총회일	2021. 6. 1.
신설회사의 창립총회일	2021. 6. 1.
분할등기일(예정일)	2021. 6. 1.

* 상기 일정은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사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내용 중 분할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는 이사회결의 및 공고로 갈음할 수 있음.

* 분할등기일은 분할등기 신청 예정일임.

4. 분할회사에 관한 사항

(1) 상호, 목적, 본점소재지, 공고방법

상호	주식회사 카카오
목적	1. 컴퓨터, 멀티미디어 프로그램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 2. 데이터 베이스 검색, 개발 및 판매업 3. 컴퓨터 및 주변기기 대여 및 판매업 4. 멀티 미디어 프로그램 개발, 제조 및 판매업 5. 정보처리 및 부가통신업, 별정통신사업 6. 문화예술분야 기획, 전시 및 부대사업 7. 교육 및 컨설팅업 8. 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 및 유통업 9. 의료용품 및 건강식품 판매업 10. 직업정보제공사업, 유료직업소개사업 및 근로자 파견사업 11. 방송채널사용사업 등 방송사업 12. 광고업 13. 만화 출판업 14. 게임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15. 옥외광고업 16. 선불전자지급수단관리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 17. 지도제작업

	18. 인터넷서비스 19. 콘텐츠 제작, 유통, 및 판매업 20. 캐릭터 상품의 제조, 판매업 및 제3자 라이선싱 부여 21. 통신판매업 22. 전기통신업 23. 유선통신업 24. 무선통신업 25. 전자금융업 26. 위치 정보 및 위치 기반 서비스업 27. 대리운전서비스업 28. 오투오(O2O)서비스업 29. 일반여행업 30. 부동산 임대업, 개발 및 공급업 31. 저작권 및 저작권접권 등의 중개알선업 32. 국내외의 공연 및 이벤트 기획, 제작, 투자 및 판매업 33. 각항의 목적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일체의 사업활동 및 투자
본점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42(영평동)
광고방법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akaocorp.com)

(2) 감소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액

분할회사는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므로 이로 인해 감소되는 분할회사의 자본금 및 준비금은 없음.

(3) 자본감소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4) 분할 후 발행주식의 총수

본건 분할은 단순·물적분할로서 분할존속회사의 분할 후 발행주식총수는 변동이 없음.

(5)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해당사항 없음.

(6)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 ① 분할회사는 본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설회사에 속할 일체의 적극, 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함)를 신설회사에 이전하는 것으로 한다.
- ②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의 목록과 가액은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재산목록을 기초로 작성된 **【별첨1】분할재무상태표와 【별첨2】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i)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증감사항을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하고, (ii) 분할기일에 이전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본건 분할 이후 신설회사의 영업에 필요한 자금 수요를 고려하여 분할회사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그 가액을 증감시킬 수 있다.

- ③ 전항에 의한 이전대상 재산의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한다.
- ④ 분할대상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회사와 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i) 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 등의 승인/인가/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나 (ii)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분할대상부문과 그 이외의 사업 부문에 모두 관련됨에도, 해당 계약 중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부분과 그 외의 사업 부문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그와 같다.
- ⑤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대상부문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는 동산, 부동산, 분할대상부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계 및 그에 따른 권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근저당권 기타 담보에 관한 권리는 신설회사에 귀속한다.
- ⑥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중 【별첨3】승계대상 소송현황에 기재된 소송은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내역은 분할기일에 변경될 수 있다.
- ⑦ 분할회사는 신설회사가 설립됨과 동시에 신설회사가 분할 이전에 분할대상부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의 체결 등 필요한 협조를 제공한다.
- ⑧ 분할 전후 요약 재무구조(2020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백만원)

계정	분할전	존속	신설
자산총계	7,345,506	7,151,496	934,314
유동자산	1,782,402	1,681,731	100,671
비유동자산	5,563,104	5,469,765	833,643
부채총계	2,020,061	1,826,051	194,711
유동부채	1,421,581	1,308,748	112,833
비유동부채	598,480	517,303	81,878
자본총계	5,325,445	5,325,445	739,603
자본금	44,301	44,301	500
주식발행초과금	4,986,863	4,986,863	739,103
자본조정	18,617	18,617	
기타포괄손익누계액	66,514	66,514	
이익잉여금	209,150	209,150	

* 단, 상기 수치는 분할기일에 이전될 최종 자산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7)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
해당사항 없음.

5. 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1) 상호, 목적, 본점소재지 및 공고의 방법 등

상호	국문명: 주식회사 멜론컴퍼니 영문명: Melon Company Corp.
목적	【별첨4】신설법인의 정관 제2조 참조
본점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공고방법	인터넷 홈페이지(www.melon.com).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

(2)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

구분	내용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000주
1주의 금액	500원

(3)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구분	내용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1,000,000주
주식의 종류	보통주

* 단, 상기 발행주식 수 및 금액은 분할기일에 이전될 최종 자산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신설회사 주주에 대한 주식배정에 관한 사항

본건 분할은 단순·물적분할로서 신설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분할회사에 100% 배정한다.

(5)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

해당사항 없음.

(6) 신설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

구분	금 액
자 본 금	500,000,000원
준 비 금	739,103,434,718원

* 상기금액은 2020년 12월 31일 재무제표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며, 분할기일에 이전될 최종 자산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함.

(7) 신설회사에 이전될 분할회사의 재산과 그 가액

신설회사에 이전될 분할회사의 재산과 그 가액은 본 분할계획서 4.(6)항 기재와 같다.

(8) 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거 분할회사와 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로 인해 이전되는 사업부문과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채무만을 부담하고 분할회사의 채무 중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분할 후 존속하는 회사도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9) 분할등기일

분할회사는 2021년 6월 1일(예정)을 분할등기일로 한다.

(10) 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와 최초 사업년도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 등에 관한 사항

① 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의 현황

직명	성명	생년월일	약력
사내이사	이진수	1973. 8. 27.	(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사내이사	김성수	1962. 1. 8.	(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사내이사	최용석	1976. 10. 25.	(현) ㈜카카오 성장지원실장
감사	정태성	1975. 3. 1.	(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감사

* 임원들의 임기는 신설회사의 설립일로부터 개시됨.

* 상기 임원목록은 잠정안으로서 분할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일 이전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② 최초 사업년도 이사과 감사의 보수한도

창립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11) 종업원 승계와 퇴직금 등

분할기일 현재 "분할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및 관련 법률관계(그들의 퇴직금 등)는 2021년 6월 1일(분할기일)자로 신설회사에 승계된다.

(12) 신설회사의 정관

신설회사의 정관은 【별첨4】와 같다.

(13) 신설회사의 설립방법

신설회사는 다른 주주를 모집하지 않고 분할회사로부터 승계하는 재산만으로 자본을 구성한다.

6. 기타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본 분할계획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또한, 본 분할계획서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할 경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목록에 대해 i)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써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와 ii)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 및 iii) 본 분할계획서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이사회결의 및/또는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다.

① 분할회사 및 신설회사의 회사명

② 분할일정

③ 분할비율

④ 분할회사의 감소할 자본과 준비금의 액

- ⑤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 ⑥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 ⑦ 분할 당시 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
- ⑧ 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 ⑨ 신설회사 및 분할회사의 정관

(2)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단순분할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음.

(3) 회사간에 인수·인계가 필요한 사항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회사와 신설회사 간에 인수·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부문과 관련한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회사와 신설회사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4) 개인정보의 이전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부문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관련 법령상 모든 개인정보를 신설회사로 이전하되, 분할회사는 분할로 인한 개인정보의 이전에 관한 통지 등 관련 법령의 기한 내에 요구되는 절차를 취한다

2021년 3월 12일

주식회사 카카오

공동대표이사 여민수

공동대표이사 조수용

별첨서류 :

- 1. 분할재무상태표
- 2-1. 승계대상 재산 목록
- 2-2. 승계대상 지식재산권 목록 (일부 비공개)
- 3. 승계대상 소송 목록 (비공개)
- 4. 신설법인의 정관

(별첨 1) 분할재무상태표

(단위 : 원)

과목	분할전	분할후	
		존속회사	신설회사
자산			
I. 유동자산	1,782,401,903,517	1,681,731,041,628	100,670,861,889
현금및현금성자산	1,356,884,920,831	1,296,884,920,831	60,000,000,000
단기금융상품	65,497,423,866	65,497,423,866	
파생상품자산	94,116,000	94,116,000	
매출채권	120,477,615,976	119,521,133,998	956,481,978
단기금융리스채권	5,035,417,806	5,035,417,806	
기타유동금융자산	203,640,384,338	170,195,711,502	33,444,672,836
기타유동자산	30,772,024,700	24,502,317,625	6,269,707,075
II. 비유동자산	5,563,104,581,267	5,469,764,953,657	833,643,132,553
장기금융상품	10,000,000,000	10,000,0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59,626,742,668	59,626,742,66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536,800,669,867	536,800,669,867	
종속기업,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 자	2,393,425,547,162	3,133,028,981,880	
장기금융리스채권	16,851,382,170	16,851,382,170	
유형자산	272,117,410,599	268,562,615,578	3,554,795,021
무형자산	2,106,230,935,896	1,293,268,541,840	812,962,394,056
사용권자산	126,831,631,071	120,409,063,758	6,422,567,313
퇴직연금운용자산	7,696,112,461	8,396,182,686	
기타비유동금융자산	22,896,754,400	12,297,259,514	10,599,494,886
기타비유동자산	10,627,394,973	10,523,513,696	103,881,277
자산총계	7,345,506,484,784	7,151,495,995,285	934,313,994,442
부채			
I. 유동부채	1,421,581,282,550	1,308,748,128,710	112,833,153,840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035,669,215,930	953,223,083,027	82,446,132,903
단기차입금	57,987,200,330	57,987,200,330	
기타유동금융부채	2,051,114,005	2,051,114,005	
미지급법인세	49,822,909,677	49,822,909,677	
단기리스부채	37,613,103,713	36,464,479,740	1,148,623,973
기타유동부채	238,437,738,895	209,199,341,931	29,238,396,964
II. 비유동부채	598,480,116,822	517,302,781,163	81,877,405,884
비유동매입채무및기타채무	4,590,817,184	4,590,817,184	
장기차입금	321,761,482,011	321,761,482,011	
비유동충당부채	10,333,202,884	10,333,202,884	
장기리스부채	121,899,752,206	116,315,010,187	5,584,742,019
순확정급여부채			700,070,225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	27,047,368,083	25,059,385,963	1,987,982,120
이연법인세부채	108,245,067,298	34,640,455,778	73,604,611,520

기타비유동부채	4,602,427,156	4,602,427,156	
부채총계	2,020,061,399,372	1,826,050,909,873	194,710,559,724
자본			
I. 자본금	44,300,999,000	44,300,999,000	500,000,000
II. 자본잉여금	4,986,863,484,685	4,986,863,484,685	739,103,434,718
III. 자본조정	18,616,904,707	18,616,904,707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66,513,984,520	66,513,984,520	
V. 이익잉여금	209,149,712,500	209,149,712,500	
자본총계	5,325,445,085,412	5,325,445,085,412	739,603,434,718
부채 및 자본총계	7,345,506,484,784	7,151,495,995,285	934,313,994,442

* 단, 상기 수치는 분할기일에 이전될 최종 자산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분할기일에 이전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본건 분할 이후 신설회사의 영업에 필요한 자금 수요를 고려하여 분할회사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그 가액을 증감시킬 수 있다.

(별첨 2-1) 승계대상 재산 목록

(단위 : 원)

계정명	내역	금액
자산		
I. 유동자산		100,670,861,889
현금및현금성자산		60,000,000,000
매출채권	멜론 사업부문 외상매출금	956,481,978
기타유동금융자산	멜론 사업부문 미수금	33,444,672,836
기타유동자산	멜론 사업부문 선급금, 선급비용	6,269,707,075
II. 비유동자산		833,643,132,553
유형자산	멜론 사업부문 전산장비 등	3,554,795,021
무형자산	멜론 사업부문 영업권, 지식재산권, 기타무형자산	812,962,394,056
사용권자산	멜론 사업부문 부동산, 차량 사용권자산	6,422,567,313
기타비유동금융자산	멜론 사업부문 장기미수금, 임차보증금	10,599,494,886
기타비유동자산	멜론 사업부문 장기선급비용	103,881,277
자산총계		934,313,994,442
부채		
I. 유동부채		112,833,153,840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멜론 사업부문 미지급금	82,446,132,903
단기리스부채	멜론 사업부문 부동산, 차량 리스부채	1,148,623,973
기타유동부채	멜론 사업부문 미지급비용, 선수금, 선수수익, 예수금	29,238,396,964
II. 비유동부채		81,877,405,884
장기리스부채	멜론 사업부문 부동산, 차량 리스부채	5,584,742,019
순확정급여부채	멜론 사업부문 순확정급여부채	700,070,225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	멜론 사업부문 장기종업원급여부채	1,987,982,120
이연법인세부채	멜론 사업부문 이연법인세부채	73,604,611,520
부채총계		194,710,559,724
자본		
I. 자본금		500,000,000
II. 주식발행초과금		739,103,434,718
자본총계		739,603,434,718
부채와 자본총계		934,313,994,442

* 단, 상기 수치는 분할기일에 이전될 최종 자산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분할기일에 이전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본건 분할 이후 신설회사의 영업에 필요한 자금 수요를 고려하여 분할회사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그 가액을 증감시킬 수 있다.

(별첨 2-2) 승계대상 지식재산권 목록

1. 승계대상 상표 목록

순번	명칭	출원번호	출원일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출원국가
1 ~5 비공개						
6	멜론아지톡, Aztalk	40-2016-0010644	2016-02-12	40-1211127-0000	2016-10-24	대한민국
7	멜론아지톡, Aztalk	41-2016-0006729	2016-02-12	41-0380987-0000	2016-12-19	대한민국
8	멜론아지톡, Aztalk	41-2016-0006727	2016-02-12	41-0380986-0000	2016-12-19	대한민국
9	멜론티켓, Ticket	40-2016-0009776	2016-02-05	40-1211114-0000	2016-10-24	대한민국
10	멜론티켓, Ticket	41-2016-0006243	2016-02-05	41-0375648-0000	2016-10-24	대한민국
11	멜론쇼핑, Shopping	40-2016-0009777	2016-02-05	40-1211115-0000	2016-10-24	대한민국
12	멜론쇼핑, Shopping	41-2016-0006245	2016-02-05	41-0384914-0000	2017-01-24	대한민국
13	멜론쇼핑, Shopping	41-2016-0006246	2016-02-05	41-0384915-0000	2017-01-24	대한민국
14	○ : 멜론 BI 도형	41-2016-0006248	2016-02-05	41-0384917-0000	2017-01-24	대한민국
15	○ : 멜론 BI 도형	41-2016-0006247	2016-02-05	41-0384916-0000	2017-01-24	대한민국
16	○ : 멜론 BI 도형	40-2016-0009779	2016-02-05	40-1283809-0000	2017-09-07	대한민국
17	Melon	41-2016-0003967	2016-01-26	41-0375644-0000	2016-10-24	대한민국
18	Melon	40-2016-0006177	2016-01-26	40-1211079-0000	2016-10-24	대한민국
19	Melon	41-2016-0003969	2016-01-26	41-0380981-0000	2016-12-19	대한민국
20	(상표명칭 정보 없음) : 쇼잉 관련 도형	41-2015-0039498	2015-08-20	41-0357264-0000	2016-04-26	대한민국
21	Showing	40-2015-0061819	2015-08-20	40-1174793-0000	2016-04-26	대한민국
22	(상표명칭 정보 없음) : 쇼잉 관련 도형	40-2015-0061820	2015-08-20	40-1182265-0000	2016-06-02	대한민국
23	(상표명칭 정보 없음) : 쇼잉 관련 도형	41-2015-0039499	2015-08-20	41-0362471-0000	2016-06-14	대한민국
24	Showing	41-2015-0039496	2015-08-20	41-0366218-0000	2016-07-19	대한민국
25	Showing	41-2015-0039497	2015-08-20	41-0366219-0000	2016-07-19	대한민국
26	쇼잉, SHOWING	40-2015-0057949	2015-08-04	40-1174775-0000	2016-04-26	대한민국
27	쇼잉, SHOWING	41-2015-0036927	2015-08-04	41-0357257-0000	2016-04-26	대한민국
28	쇼잉, SHOWING	41-2015-0036928	2015-08-04	41-0357258-0000	2016-04-26	대한민국
29	MELON SHOPPING	41-2015-0010419	2015-03-06	41-0343604-0000	2016-01-04	대한민국
30	(상표명칭 정보 없음) : 마이크 도형	41-2014-0047647	2014-11-18	41-0328619-0000	2015-08-04	대한민국
31	(상표명칭 정보 없음) : 마이크 도형	40-2014-0077683	2014-11-18	40-1125708-0000	2015-08-25	대한민국
32	MelOn	2014-26694	2014-04-07	5704794	2014-09-26	일본
33	MELONAZTALK	40-2014-0000789	2014-01-06	40-1035079-0000	2014-04-30	대한민국
34	MELONAZITER	40-2014-0000787	2014-01-06	40-1035047-0000	2014-04-30	대한민국
35	MELONTALK	41-2014-0000476	2014-01-06	41-0290941-0000	2014-06-13	대한민국
36	MELONTALK	41-2014-0000475	2014-01-06	41-0290971-0000	2014-06-13	대한민국
37	MELONAZTALK	41-2014-0000474	2014-01-06	41-0290963-0000	2014-06-13	대한민국
38	MELONAZTALK	41-2014-0000473	2014-01-06	41-0290977-0000	2014-06-13	대한민국

순번	명칭	출원번호	출원일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출원국가
39	MELONAZITER	41-2014-0000472	2014-01-06	41-0290964-0000	2014-06-13	대한민국
40	MELONAZITER	41-2014-0000471	2014-01-06	41-0290954-0000	2014-06-13	대한민국
41	MELONTALK	40-2014-0000790	2014-01-06	40-1035036-0000	2014-04-30	대한민국
42	멜론, MELON	40-2010-0005075	2010-01-28	40-0879501-0000	2011-09-06	대한민국
43	MelOn	41-2008-0020963	2008-07-31	41-0190097	2009-09-23	대한민국
44	Melon	41-2008-0020964	2008-07-31	41-0190098-0000	2009-09-23	대한민국
45	MelOn	40-2006-0049124	2006-09-25	40-0719992-0000	2007-08-07	대한민국
46	MelOn	40-2006-0049117	2006-09-25	40-0754778-0000	2008-07-24	대한민국
47	멜론캔버스, MelOn Canvas	41-2006-0006870	2006-03-17	41-0144028-0000	2007-02-02	대한민국
48	맛있는 음악디저트-멜론쥬스, Melon Juice	40-2005-0021429	2005-05-12	40-0655041-0000	2006-03-15	대한민국
49	맛있는 음악디저트-멜론쥬스, Melon Juice	41-2005-0011038	2005-05-12	41-0132928-0000	2006-06-02	대한민국
50	멜론쥬스	41-2005-0009560	2005-04-25	41-0128427-0000	2006-02-23	대한민국
51	Melon Juice	41-2005-0009559	2005-04-25	41-0128426-0000	2006-02-23	대한민국
52	멜론쥬스	41-2005-0009555	2005-04-25	41-0128422-0000	2006-02-23	대한민국
53	Melon Juice	41-2005-0009554	2005-04-25	41-0128421-0000	2006-02-23	대한민국
54	Melon	41-2005-0009558	2005-04-25	41-0128425-0000	2006-02-23	대한민국
55	Melon	40-2005-0018323	2005-04-25	40-0655038-0000	2006-03-15	대한민국
56	Melon 뮤직 인터페이스	41-2004-0024294	2004-11-11	41-0124535-0000	2005-12-06	대한민국
57	뮤직 인터페이스 멜론, Music Interface Melon	41-2004-0023673	2004-11-04	41-0124530-0000	2005-12-06	대한민국
58	멜론, MELON	40-2004-0034928	2004-07-29	40-0632655-0000	2005-09-26	대한민국
59	멜론, MELON	41-2004-0016663	2004-07-29	41-0123129-0000	2005-11-04	대한민국

2. 승계대상 특허 목록

순번	명칭	관리번호	출원번호	출원일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출원국가
1 ~7 비공개							
8	아티스트와 팬과의 관계 형성 시스템	KP-2014-062-KR	10-2014-0152884	2014-11-05	10-1620728	2016-05-04	대한민국
9	아티스트 순위 산출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산출 방법	KP-2014-061-KR	10-2014-0152888	2014-11-05	10-1652588	2016-08-24	대한민국
10	아티스트와 팬과의 관계 형성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관계 형성 방법	KP-2014-060-KR	10-2014-0152885	2014-11-05	10-1620729	2016-05-04	대한민국
11	아티스트별 유저의 친밀도 제공 시스템 및 방법	KP-2014-059-KR	10-2014-0152886	2014-11-05	10-1620730	2016-05-04	대한민국

* 상기 순번 1번의 권리는 출원 완료 후 출원번호와 출원일자를 기재할 수 있는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부여함.

3. 승계대상 도메인 목록

순번	도메인	생성일	만료일	등록기관
1	anti-melon.co.kr	2004-08-14	2022-08-14	MEGAZONE
2	anti-melon.com	2004-08-14	2022-08-14	MEGAZONE
3	antimelon.co.kr	2004-08-13	2022-08-13	MEGAZONE
4	antimelon.com	2004-08-14	2022-08-14	MEGAZONE
5	biz-melon.co.kr	2007-03-28	2022-03-28	MEGAZONE
6	biz-melon.com	2007-03-28	2022-03-28	MEGAZONE
7	biz-melon.kr	2007-04-13	2022-04-13	MEGAZONE
8	bizmelon.co.kr	2007-03-28	2022-03-28	MEGAZONE
9	bizmelon.com	2007-03-28	2022-03-28	MEGAZONE
10	bizmelon.kr	2007-04-13	2022-04-13	MEGAZONE
11	bizmelon.net	2007-03-28	2022-03-28	MEGAZONE
12	melon.co.kr	1999-05-14	2021-10-15	MEGAZONE
13	melon.com	2004-03-24	2022-03-24	MEGAZONE
14	melon.do	2017-01-20	2022-01-20	IBI
15	melon.kr	2007-03-07	2022-03-07	MEGAZONE
16	melon.mobi	2006-05-22	2022-05-22	MEGAZONE
17	melon.ne.kr	2004-11-08	2021-11-08	MEGAZONE
18	melon.pe.kr	2004-11-08	2021-11-08	MEGAZONE
19	melon2u.co.kr	2004-08-03	2022-08-03	MEGAZONE
20	melon2u.kr	2007-03-07	2022-03-07	MEGAZONE
21	melon4u.co.kr	2004-08-03	2022-08-03	MEGAZONE
22	melon4u.kr	2007-03-07	2022-03-07	MEGAZONE
23	melonmusic.co.kr	2004-08-03	2022-08-03	MEGAZONE
24	melonmusic.kr	2007-03-07	2022-03-07	MEGAZONE
25	melonmusic.net	2004-08-03	2022-08-03	MEGAZONE
26	melonstudio.co.kr	2020-10-29	2021-10-29	MEGAZONE
27	mymelon.co.kr	2004-08-03	2022-08-03	MEGAZONE
28	mymelon.kr	2007-03-07	2022-03-07	MEGAZONE
29	mymelon.net	2004-08-03	2022-08-03	MEGAZONE
30	tmelon.co.kr	2005-09-20	2021-09-20	MEGAZONE
31	tmelon.kr	2007-03-07	2022-03-07	MEGAZONE

(별첨 3) 승계대상 소송 목록 (비공개)

정 관

총 칙

제1조 (상 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멜론컴퍼니”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Melon Company Corp.”이라 표기한다.

제2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음반 기획, 제작 유통 및 판매(도, 소매)업
2. 디지털콘텐츠 기획, 제작, 유통 및 판매업
3. 카세트 테이프 녹음, 제조 및 판매업
4. 광디스크 녹음, 제조 및 판매업
5. 인터넷 서비스업
6.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7. 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 통신판매업
8. 도서출판업
9. 부동산 임대업
10. 애니메이션 제작 판매업
11. 저작권 및 저작권접권 등의 중개알선업
12. 방송채널사용 사업
13. 국내외의 공연 및 이벤트 기획, 제작, 투자 및 판매업
14. 통신망을 이용한 데이터 및 정보의 축적, 배급, 판매사업
15. 전자 및 정보통신 기기 유통, 판매 및 임대업
16. 광고사업
17.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공사업
18. 콘텐츠 기반 유·무선 부가통신사업
19.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 및 녹음시설 운영 관련 사업
20. 음반, 비디오물 등 개인 및 가정용품 운영 관련 사업
21. 노래연습장 등 운동 및 오락문화 시설 운영 관련 사업
22. 공연 시설 운영 등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사업
23. 오락, 문화, 외식 관련 프랜차이즈사업
24.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25. 전자금융업
26. 선불전자지급수단관리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
27. 부가통신사업
28. 위치 정보 및 위치 기반 서비스업
29. 정보처리 및 전기통신업
30. 위 각호에 직,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사의 사업활동 일체

제3조 (본점의 소재지)

회사의 본점은 경기도 성남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 등을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melon.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한다.

제5조 (발행예정주식총수 및 1 주의 금액)

-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 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제6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수는 1,000,000 주로 한다.

제7조 (주권의 종류)

회사의 주권은 1 주권, 5 주권, 10 주권, 50 주권, 100 주권, 500 주권, 1,000 주권 및 10,000 주권, 1,000,000 주권의 9 종류로 한다.

제8조 (주식의 종류, 수 및 내용)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9조 (신주인수권)

-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주 외의 자 또는 주주 중 일부(주주에게 그가 소유한 주식수의 비율과 다르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을 포함함)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제10조 (주식매수선택권)

- ① 회사는 관계법령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생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인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보통주식인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은 그 부여 당시에 주주총회에서 정한다. 다만 그 기간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 시작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후 2년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시 주주총회에서 정한 2년 보다 장기의 기간)내에 퇴임, 퇴직하는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12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회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13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2 장 사 채

제14조 (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 12 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3 장 주주총회

제16조 (소집시기)

-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수시로 소집한다.

제17조 (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가 부재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9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8조 (소집통지 및 공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 주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또는 소집기간을 단축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본점 이외의 장소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 (의 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②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주주의 의결권 및 대리행사)

- ①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 ②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결의방법)

주주총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써 이를 결정한다.

제23조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회사의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4 장 임원과 이사회

제24조 (이사 및 감사의 수)

- ①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한다.
- ② 회사의 감사는 1인으로 한다.

제25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 ①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 (이사 및 감사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개최되는 3번째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27조 (이사 및 감사의 보선)

이사 또는 감사의 수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제28조 (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29조 (대표이사의 직무)

-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대표이사가 부재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 (이사의 직무)

-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 (감사의 직무)

- ①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 및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감사한다.
-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청구를 하였음에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2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

-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②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33조 (이사 및 감사의 책임감경)

- ①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은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상법 제414조에 따른 감사의 책임에 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34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회일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5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 ① 이사회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6조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고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7조 (감사록)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 5 장 회 계

제38조 (영업연도)

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9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비치)

- ① 당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총회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영업보고서
-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일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감사는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 내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일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사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⑤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⑥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년도 잉여금(이월이익잉여금 포함)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준비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 이익잉여금 처분액

제41조 (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42조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이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 ② 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6 장 기 타

제43조 (내부규정)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업무수행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 등 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44조 (규정의 사항)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 상법 및 기타의 법령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회사가 설립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의 영업연도)

회사의 최초의 영업연도는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그 해의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제3조 (분할에 의한 회사 설립)

회사는 주식회사 카카오의 단순물적분할(이하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며, 분할로 인하여 회사에 이전되는 재산 및 그 가액 등은 2021. 3. 29.자 주식회사 카카오의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분할계획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

제4조 (분할 전 회사의 명칭과 주소)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분할 전 주식회사 카카오의 대표이사가 기명날인한다. 분할 전 주식회사 카카오의 명칭, 주소 및 대표이사의 성명은 다음과 같다.

주식회사 카카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42(영평동)
공동대표이사 여 민 수
공동대표이사 조 수 용

제5조 (최초의 대표이사)

회사의 최초의 대표이사는 제 28 조에도 불구하고 창립총회에서 선임한다.

위와 같이 주식회사 멜론컴퍼니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분할 전 회사 주식회사 카카오의 대표이사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2021 년 3 월 29 일

주식회사 카카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42(영평동)
공동대표이사 여 민 수 (인)
공동대표이사 조 수 용 (인)

위임장

본인은 2021년 3월 29일 개최하는 주식회사 카카오의 제 26기 정기주주총회 및 속회 또는 연회에서 _____을 그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내용과 같이 찬반표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

- 다 음 -

1. 주주번호 : _____
2. 소유주식수 : _____ 주
3. 의결권 있는 주식수 : _____ 주
4. 위임할 주식수 : _____ 주
5. 주주총회 목적사항 및 목적사항별 찬반 여부

의안	주주총회 목적사항		찬성	반대
제1호 의안	제 26기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 승인의 건(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현금배당: 주당 150원)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2-1. 사업의 목적 변경의 건(제2조)		
		2-2. 기준일 변경의 건(제6조의3,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37조, 제37조의2)		
		2-3.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 선임의 건(제27조)		
		2-4. 기타 일부 조항 변경의 건(제12조, 제15조의2 제23조, 제29조, 부칙)		
		2-5. 액면분할의 건(제6조)		
제3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3인)	3-1. 최세정 사외이사 선임의 건 (2년)		
		3-2. 조규진 사외이사 선임의 건 (2년)		
		3-3. 박새롬 사외이사 선임의 건 (2년)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윤석 선임의 건 (2년)			
제5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인)	5-1. 최세정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년)		
		5-2. 조규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년)		
제6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120억원)			
제7호 의안	이사회에서 기 결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제8호 의안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6. 기타 사항(수정안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위임 등)

- 주주총회 시 새로이 상정된 안건이나 각호 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될 경우에는 대리인이 주주의 의사표시가 위 5번 항목에서 표시된 찬반의 취지에 합치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
- 다만 아래에 명시적으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아래의 지시한 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겠습니다.

항목	지시내용

주 주 명 : (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위임일자 및 위임시간 : 2021년 월 일 시

※ 찬성, 반대 표시가 분명하지 않은 위임장은 그 효력이 없으며, 위임 시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만 유효합니다.